

## 1. 개요

- (적용기간) '21.3.29.(월) 0시 ~ 4.11.(일) 24시 (2주간 적용)
- (조치내용) 거리두기 단계(2단계)를 유지하며 사업장·다중이용시설의 기본 방역 관리 강화 및 봄철 행락객 증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 강화

- ◆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
  - \*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300~400명대 정체 양상 고려
- ◆ 유증상자 관리 및 사업장·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 관리 강화
  - \*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 쇄신 필요
- ◆ 봄철 행락객 증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 강화

## 2. 주요 조치사항

### ① 주요 방역 조치

- (사적 모임)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
  - \* 동거·직계 가족, 상견례,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
- (무 도 장) 클라 텍 방역수칙\*을 적용하여 방역 관리 강화
  - \* ① 시설면적 8m<sup>2</sup>당 1명 인원 제한 ② 물,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
  - ③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④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
- (22시 운영시간 제한) 유흥시설, 식당·카페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
- (기본방역수칙 강화)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'기본방역수칙' 적용
  -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\*을 추가하여 기본방역수칙 적용
  - \* (추가 9종 시설) 스포츠 경기장(관람), 카지노, 경륜·경마·경정장, 미술관·박물관, 도서관, 키즈카페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, 마사지업·안마소

- 1 -

### <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>

구분	수도권(2단계)	비수도권(1.5단계)
5인 사적모임 금지		
* 예외 : ①직계가족·상견례·영유아(8인),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	전국시행	전국시행
영화관, PC방, 오락실, 학원, 독서실, 늘이공원, 이미용업, 대형마트	운영시간 제한 없음	운영시간 제한 없음
식당·카페(취식금지)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패티룸, 실내스탠딩공연장	운영시간 제한(22시)	운영시간 제한 없음 *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(22시)
유흥시설 6종 (유흥단란·감성주점·클리닉·헌팅포차·홀덤펍)	운영시간 제한(22시)	운영제한 제한 없음
행사 제한 인원	100명 미만	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*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
종교활동	정규예배 등 20% 이내 * 모임식사숙박 금지	정규예배 등 30% 이내 * 모임식사숙박 금지

### ② 기본방역수칙 강화 (별첨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참고)

- (필요성) 방역 긴장감 강화를 위해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준비한 '기본방역수칙' 조기 추진 필요
  - \*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할 방역수칙 정비
- (구성)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
  -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 및 상황별 수칙을 제시,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구분하여 제시
  - 특히,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·사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,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 특성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
- (강화 내용) 다소 느슨해진 출입자명부관리\*를 강화,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모든 출입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등 방역조치 강화
  - \* (예시) (현재) 1명이 대표로 작성하는 등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 → (수정) 모든 출입자가 작성

- 2 -

###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

○ (주요내용) 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(안)에서 7개로 강화

현행 기본수칙	기본방역수칙
마스크 착용 의무	마스크 착용 의무
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	출입자명부 관리
출입자명부 관리	주기적 소독 및 환기
주기적 소독 및 환기	음식 섭취 금지
	증상확인 및 출입제한
	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	방역수칙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



- (마스크 착용) (기준)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

→ (수정) 실내 다중이용시설·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,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

- (출입자명부관리) (기준) 유흥시설\*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,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→ (수정)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\*\*는 전자출입 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

\* ^유 흥 시 설 (유 흥 주 점·단 란 주 점·경 성 주 점·현 텅 포 차) ^클 라 텍, ^홀 덤 페스 전 자 출 입 명 부 의 무 화

\*\* (현재)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, 실제 준수는 미흡 → (수정)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

- (소독·환기 강화) (기준)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·환기 의무화 →(수정) 모든 다중이용시설·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

- (음식섭취금지) (기준)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→ (수정)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(식당·카페 등),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

\* 현행 수도권(2단계) 14종, 비수도권(1.5단계)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

- (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) 다중이용시설·사업장의 모든 이용자·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

- (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) (기준)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→ (수정)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,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

- (방역수칙·이용가능 인원 게시·안내)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 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

\* 유흥시설(5종), 홀덤법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, 오락실·밀티방, 전시회·박람회·국제회의, 경마·경륜·경정, 카지노, 종교시설

- 3 -

○ (유예기간) 현장에서의 적용 준비 및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일주일(3.29~4.4) 동안 유예기간 부여

\*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하고, 점검 및 계도 조치

○ (홍보) 각 기관, 관련 협회·단체는 기본방역수칙 인쇄, 홍보물 배포 및 출입구에 게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활성화

### 3.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

□ 고발조치(벌금) 및 과태료 부과 :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

□ 구상권 청구 :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산 시

※ (개편) 단계별 추진경과

▲(1단계) 2020. 11. 7. ~ 별도 해제 시

▲(1.5단계) 2020. 11. 23. ~ 12. 6. ▲식당·카페 조기시행(11. 21~12. 6) ▲ 1.5단계 격상 제외(강화군·옹진군)

▲(2단계) 2020. 11. 24. ~ 12. 7. (2주간)

▲(2.5단계) 2020. 12. 8. ~ 12. 28. (3주간)

- (추가 1) 겨울 스포츠시설 일반관리시설 지정 및 2.5단계 : 12. 11.(금) 0시 ~ 12. 28.(월) 24시

- (추가 2) 인천시 방역강화 조치 : 12. 13.(일) ~ 별도 해제 시

- (추가 3) 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등 추가 : 12. 19.(토) 0시 ~ 12. 28.(월) 24시

- (추가 4) 전국 연말·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: 12. 24.(목) 0시 ~ 1. 3.(일) 24시

▲(2.5단계) 연장 2020. 12. 29. ~ 2021. 2. 14. (약 6주 간)

▲(2단계) 2021. 2. 15. ~ 2021. 3. 28. (6주 간)

#### 4.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(2021.3.29.~4.11.) 방역조치(**요약표**)

##### ※ 유의사항

- 1) 적서 볼드체(밀줄)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
 2) 아래 표는 **요약표**이므로 각 유형(시설)별 세부지침 준수

구분	수도권 (거리두기 2단계 + 방역수칙 조정)
<b>① 모임·행사</b>	
사적 모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(제외) ① 직계가족(8인까지)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② 상견례(8인까지) ③ 영유아(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)를 통한하는 경우(8인까지),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), ④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⑤ 일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, ⑦ 돌잔치 전문점</li> </ul> </li> <li>- <b>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</b></li> </ul>
기타 모임·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결혼식·장례식·기념식·<b>돌잔치</b> 등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,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</li> </ul> </li> <li>▶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m<sup>2</sup>당 1명 인원제한,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</li> </ul> <p><b>&lt;인천시 조정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체 권고(2020. 11. 23. ~ 별도 해제 시)</li> <li>▶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육외 접회금지(2020. 11. 24. ~ 별도 해제 시)</li> </ul>
<b>② 다중이용시설 : 종점·일반관리시설 등</b>	
공통수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(상점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</li> </ul>
우편 시설 5종(무도장 장 도함), 흔 럼 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b></li> <li>▶ <b>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동종사자 포함)</b></li> <li>▶ <b>시설 면적 8m<sup>2</sup>당 1명 인원 제한</b></li> <li>▶ <b>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</b></li> <li>▶ <b>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정갈착용</b></li> </ul>
클라텍, 무도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물,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선택 금지</b></li> <li>▶ <b>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</b></li> <li>▶ <b>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</b></li> </ul>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b></li> <li>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시설 면적 8m<sup>2</sup>당 1명 인원 제한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</li> </ul> </li> </ul>

- 5 -

구분	수도권 (거리두기 2단계 + 방역수칙 조정)
노래연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b>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시설 면적 4m<sup>2</sup>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▶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환기(10분 이상, 대장작성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기계 환기 시설이 없는 경우, 30분간 환기</li> </ul> </li> <li>▶ <b>코인 노래방의 경우,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, 다만 4m<sup>2</sup>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</b></li> </ul>
실내 스텠딩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b></li> <li>▶ <b>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b></li> <li>▶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</li> </ul>
식당·카페 (일반음식·휴게·제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</b></li> <li>▶ <b>식당·카페 모두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</b></li> <li>▶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m<sup>2</sup> 이상)</li> <li>▶ 공동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</li> </ul>
파티 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b></li> <li>▶ <b>개별 방 면적 8m<sup>2</sup>당 1명 인원 제한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/ul> </li> <li>▶ <b>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신고면적 50m<sup>2</sup> 이상)</b></li> </ul>
실내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b>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시설 면적 4m<sup>2</sup>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▶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</li> </ul>
학원·교습소 (독서실 제외) 직업훈련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① 시설 면적 8m<sup>2</sup>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, ② 시설 면적 4m<sup>2</sup>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* ②안 중 선택</li> <li>▶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</li> </ul>
결혼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</li> </ul>
장례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</li> </ul>

- 6 -

구분	수도권 (거리두기 2단계 + 방역수칙 조정)
목욕장업	<p>&lt;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– 별도 해제 시 까지&gt;</p> <p>▶ 22시~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설 면적 8m<sup>2</sup>당 1명으로 인원 제한</li> <li>▪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대화 금지</li> <li>▶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</li> <li>▶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개시·안내</li> <li>▶ 사워시설, 옷장 한 칸 띠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잡금조치</li> <li>▶ 마스크 상시 착용(목욕실, 발한실 이용 중 외)</li> <li>▶ 목욕장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</li> <li>▶ 이용자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인증 의무화</li> <li>▶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관련 안내판 게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감기·몸살, 오한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권고)</li> </ul> </li> <li>▶ '달 목욕' 정기이용권' 신규발급 금지</li> <li>▶ 이용시간 1시간 제한(강력권고) 및 안내판 게시</li> <li>▶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금지</li> </ul>
영화관, 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▪ 좌석 한 칸 띠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띠어 앉기</li> </ul>
PC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좌석 한 칸 띠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</li> <li>▪ 음식 섭취 금지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</li> </ul>
오락실·멀티방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▪ 시설 면적 8m<sup>2</sup>당 1명으로 인원 제한</li> </ul>
독서실·스터디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▪ 좌석 한 칸 띠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</li> <li>▪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, 22시~의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li> </ul>
유원시설 (키즈카페 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</li> </ul>
키즈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*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li>▪ 식당, 카페, 공연장 등의 부대시설 운영 시 해당 방역수칙 적용</li> </ul>
아·미용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8m<sup>2</sup>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띠우기</li> </ul>
백화점·대형마트	<p>▶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마스크 착용</li> <li>▪ 주기적 환기·소독</li> </ul>
마트·상점·백화점 (300m <sup>2</sup>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마스크 착용</li> <li>▪ 주기적 환기·소독</li> </ul>

- 7 -

구분	수도권 (거리두기 2단계 + 방역수칙 조정)
<b>③ 기타 다중이용시설</b>	
숙박시설	<p>▶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</p> <p>▶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및 이용 금지</p> <p>▶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개최 및 참여 금지</p> <p>▶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</p>
국공립시설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경륜·경마·경정 운영중단</li> <li>▪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% 이내로 인원 제한</li> <li>▪ 체육시설 및 이외시설은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인원 제한</li> <li>▪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</li> </ul>
사회복지이용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이용인원 50% 이하로 제한(<b>최대 100명</b>)하는 등 방역 강화하여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</li> </ul> <p>◀ 인천시 조정▶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 설정 * 단, 둘째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 활용 등을 필수 제공 조치</li> </ul>
<b>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</b>	
마스크 착용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</li> </ul>
교통시설 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,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체 강력 권고</li> <li>▪ 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</li> </ul>
스포츠 관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10% 이내 입장</li> </ul>
종교활동	<p>▶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20% 이내 인원 참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</li> </ul>
직장근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기관별 부서별 전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</li> </ul> </li> <li>- 밀폐·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클렌터, 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</li> <li>-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</li> <li>▪ 민간 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,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치안, 국방, 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, 민간기업·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·기관 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</li> </ul> </li> </ul>

- 8 -

## 5. 우리 市 행정조치 현황

현행유지	<p><b>1)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적용기간: 2020. 8. 26. 0시 ~ 별도 해제 시</li> <li>- 개도기간: 2020. 10. 11. / 시행: 2020. 10. 12. / 과태료(사업자 300만원 이하, 이용자 10만원 이하)</li> </ul> <p><b>2)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과태료) 저번 시행기간: 2020. 11. 03. 0시 ~ 별도 해제 시</li> <li>- (과태료) 위반당사자 10만원 /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위반 300만원</li> </ul> <p>*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적용기간) 2020. 8. 20. 15시 ~ 별도 해제 시</li> <li>- (개도기간) 2020. 10. 12. / 시행: 2020. 10. 13. / (과태료) 10만원 이하</li> </ul> <p>*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적용기간) 2020. 10. 14. 0시 ~ 별도 해제 시</li> <li>- (개도기간) 2020. 11. 12. 24시 / (과태료) 시행: 2020. 11. 13. 0시</li> <li>- (과태료) 위반당사자 10만원 /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위반 300만원</li> </ul> <p><b>3)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유흥·집회금지 행정조치</b> ※ 집회 및 사례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·폐지 또는 집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적용기간) 2020. 11. 24. 0시 ~ 별도 해제 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</li> </ul> <p>*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유흥·집회금지 행정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적용기간) 2020. 8. 24. 0시 ~ 10. 11. 24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</li> </ul> <p>*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유흥·집회금지 행정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적용기간) 2020. 10. 13. 0시 ~ 2020. 11. 23. 24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</li> </ul> <p><b>4) (기여금은 확산에 따른 신체적 대응을 위한) 우리 市 방역조치 강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월드비전(2020. 12. 13~ 2021. 3. 18.) ② 아동다문화·일인가족 특별지원(2020. 12. 15~ 2021. 1. 18.) ③ 인천시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 대상자 1/2 의무시행(2020. 12. 15~ 2021. 1. 18.) ④ 인천시 전면 소모임 자체 강력 권고(2020. 11. 23. ~ 별도 해제 시)</li> </ul> <p><b>5) 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회금지 행정조치(기간만료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적용기간: 2020. 12. 23.(금) 04 ~ 2021. 1. 31.(화) / (벌금) 주최자 및 참여자 300만원 이하</li> <li>- (적용예외) 공적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/ 시위·분화된 공간 50인 미만 / 결혼식 및 장례식(2.5단계 적용 50인 미만) / 기타 일상적 가정생활(가족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) 등 ※ 경부방침 : 전국 공통(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.4.)</li> </ul> <p><b>6) 인천시 노인요양시설 등의 방역지침 행정조치</b> ※ 노인집체파 -21375(2020.12.30.)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적용기간) 2020. 12. 31.(목) ~ 상황 종료 시 / 과태료(책임자 300만원 이하, 이용자 10만원 이하)</li> </ul>
	<p>* 인천시 소재 편의점 친환경(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) 행정조치 해제 2020. 9. 14. 0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과태료) 2020. 9. 3. 0시 ~ 9. 13. 24시</li> </ul> <p>* 인천도시철도 심야시간대(21시~01시) 30% 감축운행(기간만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적용기간) 2020. 12. 8. ~ 2021. 2. 16.</li> </ul>
조치해제	

## 6. 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현황

구 분	대 상 시 설
전자출입명부 의무화 (간편 전화체크인 가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유·홍시설(유·홍주점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간성주점, 헌팅포차), 폴라텍, 무도장, 허팀월, 노래연습장, 파티룸, 목욕장업(특별방역조치 종료시까지), 스포츠경기(관람)장, 카지노(외국인카지노 제외), 경륜·경정·경마</li> <li>▶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</li> </ul>
출입명부 의무화 (전자·간편전화체크인 또 는 수기기록부 선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방문관과·등, 지정관매출보관·설비스탠딩공연장, 치당·카페, 패티룸, 결혼식장·장례식장·돌·작자·친목모임·행사장, 영화관·공연장, PC방·온라인·멀티방, 식·체육시설·학원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·복지시설·스터디카페·놀이공원·위터파크·이·미용·일·미용관·바·클럽·종교시설·도서관·기즈카페·마사지점·안마소·유통물류센터·콜센터</li> <li>※ 일반관리시설 중 배화점·대형마트·풀·한정소매점(300m² 이상) : 출입명부 의무 시설 계획</li> <li>▶ 사적모임을 제외한 접·합·모임 행사, 전시회·박람회·국제회의 등</li> </ul>

- 9 -

### 참고 1 집합·모임·행사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

#### □ 사적 모임

#####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- (조치내용)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활동 금지

- (금지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게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\*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
\*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

- (인원정정) '5명의 범위'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, 등은 제외

- '사적모임'은 영유아\*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,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

\*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

#### ※ 적용 예외

##### ❶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

▪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•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
▪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

※ 직계가족 모임,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

▪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
▪ 임종 가능성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##### ❷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

**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,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·모임·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·장소**

- 이때 집합·모임·행사란 **동일 목적**을 가진 사람들이 **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**에 따라 **동일한 장소**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**적인** 집합·모임·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

<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 >

- |   |
|---|
| •(행사) 결혼식, 장례식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<br>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 |
| •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   |

\*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는 별첨 '기본방역수칙'의 해당시설 수칙 적용

- 시험 등의 경우 **분할된 공간**(예: 교실) 내 **100인 미만**이면 허용
-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**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**

- **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,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·공공 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·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**

\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인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

- 11 -

□ 적용대상(참석자 및 관리자·운영자)의 준수사항

< 사적 모임 >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참석자 수칙
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,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, 사적 모임인지 확인 ▶ 위 ①,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	▶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* (제외)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,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일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

< 집합·모임·행사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병역수칙 준수 안내 ▶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 ▶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▶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

- 12 -

## 참고 2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### □ 적용 대상

- (대상) 중점관리시설 6종 및 무도장\*(콜라텍' 방역수칙 적용)  
\* 무도장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(볼룸댄스)를 할 수 있는 시설

#### < 중점관리시설 6종 >

▲ 유흥시설 5종(무도장 포함) 및 홀덤펍
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
▲ 노래연습장 ▲ 실내 스탠딩공연장

### □ 방역수칙

- 중점관리시설 6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로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

#### <추가 적용 수칙 및 계도기간 적용 수칙>

* 아래 '추가 적용 수칙'을 포함하여,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'기본방역수칙' 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
*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(3.29. 0시~4.4. 24시)을 부여하는 수칙은 '기본방역수칙'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'계도기간 부여 수칙'에 한함

▲ 유흥시설 5종(무도장 포함) 및 홀덤펍, 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<p>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</li><li>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m<sup>2</sup>당 1명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이용인원 신정시 유흥종사자, 딜리 포함</li><li>- 클럽·나이트 춤추기 금지 및 안내</li></ul></li></ul> <p>◦(이용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이용 금지</li><li>- 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m<sup>2</sup>당 1명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이용인원 신정시 유흥종사자, 딜리 포함</li><li>- 클럽·나이트 춤추기 금지</li></ul></li></ul>	없음

- 13 -

▲ 노래연습장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<p>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</li><li>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m<sup>2</sup>당 1명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,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, 4m<sup>2</sup>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, 룸별 1명씩만 이용 안내</li></ul></li></ul> <p>◦(이용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이용 금지</li><li>- 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m<sup>2</sup>당 1명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코인노래연습장 4m<sup>2</sup>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, 룸별 1명씩만 이용</li></ul></li></ul>	<p>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/이용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계도기간 중 수기명부 비치/작성 가능</li></ul>
<p>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</li></ul>	
<p>◦(이용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이용 금지</li></ul>	
▲ 실내스탠딩 공연장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<p>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</li></ul>	<p>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/이용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기본방역수칙 중 '추가수칙'</li></ul>
<p>◦(이용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이용 금지</li></ul>	
▲ 파티룸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<p>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</li><li>- 이용인원 제한(개별 방 면적 8m<sup>2</sup>당 1명)</li></ul>	
<p>◦(이용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이용 금지</li><li>- 이용인원 제한 준수(개별 방 면적 8m<sup>2</sup>당 1명)</li></ul>	<p>없음</p>
▲ 식당·카페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<p>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가능</li></ul>	<p>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개시</li></ul>
<p>◦(이용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이용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출입구 등에 별도 이용 가능 인원 개시 및 안내</li></ul>

- 14 -

### 참고 3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#### □ 적용 대상

##### ○ (대상)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\*

\*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·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,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, 호텔, 예식장,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

##### <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>

▲ 결혼식장	▲ 장례식장	▲ 돌잔치전문점	▲ 목욕장업	▲ 영화관	▲ 공연장
▲ PC방	▲ 오락실·멀티방				
▲ 실내체육시설	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	▲ 실외체육시설			
▲ 학원 등(학원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(일반), 학원·교습소(관악기·노래·연기), 학원·교습소(댄스·무용), 학원·직업훈련기관(기술형))					
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					
▲ 유원시설(놀이공원, 워터파크)	▲ 이·미용업	▲ 백화점·대형마트			
▲ 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					

#### □ 방역수칙

##### ○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에 관한 방역수칙 중 목욕장업을 제외하고 별첨 한 '기본방역수칙'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로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

##### <추가 적용 수칙 및 계도기간 적용 수칙>

* 아래 '추가 적용 수칙'을 포함하여,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'기본방역수칙'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
*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(3.29. 0시~4.4. 24시)을 부여하는 수칙은 '기본방역수칙'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'계도기간 부여 수칙'에 험합

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돌잔치전문점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개별 돌잔치·결혼식·장례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	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결혼식장, 장례식장> -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- 1일 3회 이상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, 환기시간 계시

- 15 -

◦(이용자) - 개별 돌잔치·결혼식·장례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	- 소독대장 작성 - 방역관리자 지정 -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- 8인 이상 테이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 는 테이블 4인 기준 칸막이 설치 <돌잔치 전문점> 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환기대장 작성, 환기시간 계시
---	--

▲ 영화관, ▲ 공연장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*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◦(이용자) -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	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/이용자) - 예매자(단체예매 시)에 한해 명부작성 예 외 및 안내 - 환기, 소독대장 작성 - 방역관리자 지정 -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- 기본방역수칙 중 '추가수칙'
▲ PC방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◦(이용자) -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	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1일 3회 이상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, 환기시간 계시 - 소독대장 작성 - 방역관리자 지정 -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
--	--

▲ 오락실·멀티방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 * 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	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1일 3회 이상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, 환기시간 계시, 멀티방 개별방마다 이용 후 30분 이상 환기(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)

- 16 -

◦(이용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용인원 제한 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시설 허가신고면적 8㎡당 1명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독대장 작성</li> <li>-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-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</li> </ul>
▲ 실내체육시설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2시 이후(의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</li> <li>- 이용 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</li> </ul>	
◦(이용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2시 이후(의일 05시까지) 이용 금지</li> <li>- 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일 5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</li> <li>- 소독대장 작성</li> <li>-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-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</li> </ul> <p>&lt;GX류 운동&gt;</p>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면적산정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'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, 면적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'</li> </ul> </li> </ul>	
<체육도장류>	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겨루기 등 1경기 시간</li> </ul>	
<중저강도 운동>	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</li> </ul>	
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용인원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수용가능 관객의 10% 이내 입장</li> </ul> </li> </ul>	
◦(이용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용인원 제한 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수용가능 관객의 10% 이내 입장</li> </ul> </li> </ul>	◦기본방역수칙 전부

- 17 -

▲ 실외체육시설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없음</li> </ul>	◦기본방역수칙 전부
▲ 학원 등(학원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)(일반), 학원·교습소(관악기·노래·연기), 학원·교습소(댄스·무용), 학원·직업훈련기관(기술형)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신고면적 8㎡당 1명)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</li> <li>②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신고면적 4㎡당 1명)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, 22시 이후(의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①, ②안 중 선택</li> </ul> </li> </ul>	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, 환기시간 개시</li> <li>- 소독대장 작성</li> <li>-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-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</li> </ul>
◦(이용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신고면적 8㎡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</li> <li>②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신고면적 4㎡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고, 22시 이후(의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①, ②안 중 선택</li> </ul> </li> </ul>	<p>&lt;관악기, 노래&gt;</p> 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방역수칙 중 '추가수칙'</li> </ul>
※ 이용인원 계시 및 안내 의무는 삭제	
▲ 학원·직업훈련기관(기술형)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숙박시설 운영 금지</li> <li>• 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</li> </ul>	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방역수칙 중 '추가수칙'</li> </ul>
① 입소자(공동)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입소前) 2주간 예방관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</li> <li>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,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, 충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아워설화장실 등) 소독 강화, 대면수업 금지(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)</li> <li>-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</li> </ul>	

- 18 -

② 종사자 (공동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자가진단캡 체크 -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: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-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: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: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.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◦(이용자) - 속박시설 이용 금지 * 단, 일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	
<b>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</b>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좌석 한 칸 띠어 앉도록 하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-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, 22시 이후(익일 05시 까지) 운영 중단 ◦(이용자) - 좌석 한 칸 띠어 앉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-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, 준수 22시 이후(익일 05시 까지) 이용 금지	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음식섭취 금지(계도기간 중 칸막이 내 개별섭취 가능) -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, 환기시간 개시 - 소독대장 작성 - 방역관리자 지정 -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
<b>▲ 유원시설(키즈카페 외)</b>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 ◦(이용자) - 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 준수	◦기본방역수칙 전부

- 19 -

<b>▲ 이·미용업</b>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m <sup>2</sup> 당 1명) 또는 좌석 두 칸 띠어 앉도록 하기 ◦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m <sup>2</sup> 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띠어 앉기 ※ 이용인원 계시 및 안내 의무는 삭제	
<b>▲ 대형마트·백화점</b>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없음	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, 환기시간 개시, 자동환기시스템 상시가동 - 1일 3회 이상 소독 및 대장 작성 - 방역관리자 지정 -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
<b>▲ 종합소매업(300m<sup>2</sup> 이상)</b>	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없음	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, 환기시간 개시 - 1일 1회 이상 소독 및 대장 작성 - 방역관리자 지정 -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

- 20 -

## 참고 4 목욕장업 방역지침

### □ 목욕장업(수도권)

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(세신사, 이발사, 매점운영자, 관리점원 등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(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)</li> </ul> </li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* 인증 의무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<b>본인확인(신분증 제시) 후 수기명부 작성</b></li> <li>* <b>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</b>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경기물질,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 권고)</li> </ul> </li> <li>▶ 「달 목욕(정기 이용권)」 신규발급 금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다만, 헛수건 할인구매는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시간 1시간 제한(강력 권고) 및 안내판 게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이미용 및 점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<b>평상 음료컵은 사용금지</b></li> </ul> </li> <li>▶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별별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, 소독대장작성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▶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개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펼·접·방·등·발·한·시설·의·경·우·환·기·횟·수·증·가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▶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▶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 면적 8㎡ 당 1명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</li> </ul> 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을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* 인증 의무화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<b>본인확인(신분증 제시) 후 수기명부 작성</b></li> <li>* <b>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</b>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▶ 김기물질,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 권고)</li> <li>▶ 이용 시간 1시간 제한 준수(강력 권고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이미용 및 점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</li> </ul> </li> <li>▶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<b>평상 음료컵은 사용금지</b></li> </ul> </li> <li>▶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</li> <li>▶ 목욕실 별별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</li> <li>▶ 이용인원 제한 준수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시설 허가·신고 면적 8㎡ 당 1명)</li> </ul> </li> <li>▶ 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등 별별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별별실 내 이용자간 2m(최소1m)거리두기</li> </ul> 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에는 시설 이용 금지</li> </ul> </li> </ul>

- 21 -

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등 별별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별별실 내 이용자간 2m(최소1m)거리두기</li> </ul> </li> <li>▶ 샤워시설, 옷장 한 칸 띠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</li> </ul> </li> </ul>	

## 참고 4-1 목욕장업 방역지침 질의응답

1.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불가능한 이용객에 대한 조치 사항은?
- 스마트 핸드폰으로 확인 가능한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 작성이 어려운 목욕장 이용객에 대해서는
- 우선, 일반폰으로 가능한 ‘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\*’을 통해 목욕장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,
  - \*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전화한통으로 출입인증을 하는 출입관리방법으로, 각 기관·시설별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ARS시스템에서 방문등록이 완료
  -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확인(신분증 제시) 후에 수기명부를 추가 비치하여 운영
  - 아울러,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
2.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 조사가 실제 가능한지?

- 일부 지자체는 이미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 조사 중이며,
- 향후 시행할 지자체는 예방접종, 확진자 발생 등 검사능력을 감안하여 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해당지역 한국목욕업협회(지회) 협조 하에 자체없이 실시
- \* 검사는 종사자(세신사, 이발사, 매점운영자, 관리점원 등) 및 영업대표자 포함

- 22 -

### 3. 공용물품 사용 및 사적 대화금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

- 공용물품 중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평상, 음료컵은 금지되며, 금지품목 이외 나머지 공용물품은 수시로 표면소독 하에 사용  
- 평상 대신에 1인용 의자들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로 배치 가능
- 사적 대화금지는 종사자의 방역준수사항 고지 및 업무사항은 가능하며, 종사자·이용자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금지됨을 의미함

### 4. 목욕탕 1시간 이내 사용에 있어 강력권고 조치 범위는?

- 목욕탕의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위험도가 높아져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지켜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이며,
  - 이러한 권고문을 목욕탕 입구 등 여러 곳에 게시하여 목욕탕 등의 이용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

### 5. 달목욕(정기이용권)의 범위가 달 이외 판매하는 이용권도 해당되는 것인가?

- 정기이용권은 기간에 상관없이 신규 발급이 금지되며,
  - 다만, 정해진 일수(개월단위, 주일단위 등) 안에 반드시 소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, 횟수권 할인판매는 가능

- 23 -

## 참고 5 숙박시설 대상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

### □ 적용 대상

- (대상)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

- 「공중위생 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(호텔, 모텔, 여관 등)
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(관광호텔, 호스텔 등)

### □ 방역수칙

- 숙박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 한 '기본방역수칙'을 적용하되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

<추가 적용 수칙 및 계도기간 적용 수칙>

- \* 아래 '추가 적용 수칙'을 포함하여,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'기본방역수칙'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
- \*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(3.29. 0시~4.4. 24시)을 부여하는 수칙은 '기본방역수칙'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'계도기간 부여 수칙'에 한함

#### ▲ 숙박시설 전체
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*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행사·파티 등 주최 금지 * 바비큐 파티, 클럽 파티,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-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* 파티 적발 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 -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금지 *(이용자) - 숙박시설 주관 행사·파티 참여금지 -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 금지 -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이용금지	• 기본방역수칙 전부

- 24 -

## 참고 6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### □ 적용 대상 : 종교시설

#### □ 방역수칙

- 종교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을 적용하되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

<추가 적용 수칙 및 계도기간 적용 수칙>

- \* 아래 '추가 적용 수칙'을 포함하여,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'기본방역수칙'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
- \*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(3.29. 0시~44. 24시)을 부여하는 수칙은 '기본방역수칙'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'계도기간 부여 수칙'에 한함

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좌석 수 기준 2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*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% 이내 참여 가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</li> </ul> </li> <li>-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</li> <li>* 수련회, 기도회, 복종회, 구역 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</li> </ul>	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, 환기시간 개시</li> <li>- 소독대장 작성</li> <li>-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</li> </ul>
※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· 행사(숙박 포함)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	
◦(이용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좌석 수 기준 2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*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% 이내 참여 가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</li> </ul> </li> <li>-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</li> <li>* 수련회, 기도회, 복종회, 구역 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</li> </ul>	
※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· 행사(숙박 포함)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	

- 25 -

## 참고 7 기타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### □ 적용 대상

- (대상)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 등 8종

< 기타시설 8종 >

- ▲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 ▲ 경륜·경마·경정 ▲ 미술관·박물관 ▲ 도서관
- ▲ 키즈카페 ▲ 전시회장·박람회장 ▲ 마사지업·안마소, ▲ 국제회의장

#### □ 방역수칙

- 기타시설 8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로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

<추가 적용 수칙 및 계도기간 적용 수칙>

- \* 아래 '추가 적용 수칙'을 포함하여,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'기본방역수칙'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
- \*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(3.29. 0시~44. 24시)을 부여하는 수칙은 '기본방역수칙'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'계도기간 부여 수칙'에 한함

▲ 카지노	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용가능인원의 20%로 제한</li> </ul>		◦기본방역수칙 전부
◦(이용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용가능인원의 20% 제한 준수</li> </ul>		
▲ 전시회장·박람회 ▲ 국제회의장	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용인원 제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시설 허가신고면적 4m<sup>2</sup>당 1명</li> </ul> </li> </ul>		◦기본방역수칙 전부
◦(이용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용인원 제한 준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시설 허가신고면적 4m<sup>2</sup>당 1명</li> </ul> </li> </ul>		
▲ 미술관·박물관, ▲ 도서관, ▲ 키즈카페,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	★ 추가 적용 수칙	★ 계도기간 적용 수칙
없음		◦기본방역수칙 전부

- 26 -

## 참고 8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### □ 적용 대상

- (대상) 클센터, 유통물류센터

### □ 방역수칙

- 클센터, 유통물류센터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은 의무사항임

<추가 적용 수칙>

▲ 클센터	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◦(이용자) - 방역수칙 준수 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 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  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-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확보 및 비치  -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-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 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  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	

▲ 유통물류센터	
◦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◦(이용자) - 방역수칙 준수 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- 27 -

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- 일 1회 이상 소독(소독대장 작성) * 하역, 운반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, 작업화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-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 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  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	
---	--

- 28 -

## 참고 9 대중교통 대상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

### □ 적용 대상

#### ○ (대상)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운송수단(국제항공편 제외)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·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-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(국제항공편 제외)

### □ 방역수칙

#### ○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

이용자 수칙
▶ 마스크 착용
▶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, 국제항공편 제외